

전주 도시관리계획(효천지구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75번지 상의 전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 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주 도시관리계획(지구 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11월 15일

전 주 시 장

I. 전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변경 결정 : 변경없음

II. 전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

1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: **변경**

가. 교통시설 : **변경**

(1) 도로 : **변경**

(가) 총괄표(변경)

류 별			합 계			1류			2류			3류		
		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
합계		(기정)	37	8,252	170,220.40	11	3,598	80,589.00	5	775	10,509.50	21	3,879	67,933.70
합계		(변경)	37	8,252	170,194.10	11	3,598	80,589.00	5	775	10,509.50	21	3,879	67,907.40
일반 도로	소 계	(기정)	29	8,080	169,437.10	11	3,598	80,589.00	4	765	10,429.50	14	3,717	67,230.40
		(변경)	29	8,080	169,410.80	11	3,598	80,589.00	4	765	10,429.50	14	3,717	67,204.10
	대로		4	3,352	84,946.0	2	1,721	44,171.0	-	-	-	2	1,631	40,775.0
	중 로	(기정)	13	3,849	65,416.40	3	1,364	31,288.00	1	459	8,033.00	9	2,026	26,095.40
		(변경)	13	3,849	65,390.10	3	1,364	31,288.00	1	459	8,033.00	9	2,026	26,069.10
	소로		12	879	7,886.5	6	513	5,130.0	3	306	2,396.5	3	60	360.0
	가각및안화차선		-	-	11,188.2	-	-	-	-	-	-	-	-	-
보행자	소계		8	172	783.3	-	-	-	1	10	80.0	7	162.0	703.3
전용도로	소로		8	172	783.3	-	-	-	1	10	80.0	7	162.0	703.3

(나) 도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3	9	13	국지도로	101	중로3-4	소로 3-1	일반도로	-	국고12-917 (12.12.21.)	
변경	중로	3	9	13	국지도로	101	중로3-4	소로 3-1	일반도로	-	국고12-917 (12.12.21.)	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중로3-9 호선	• 면적감소 • 1,380.4m² → 1,354.1m²(감 26.3㎡)	•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

(2) 주차장 : 변경없음

나. 공간시설 : 변경없음

- (1) 광장 : 변경없음
- (2) 공원 : 변경없음
- (3) 녹지 : 변경없음

다. 공공 · 문화체육시설 : 변경없음

- (1) 학교 : 변경없음

라. 방재시설 : 변경없음

- (1) 하천 : 변경없음
- (2) 유수지 : 변경없음

2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: **변경**

가. 단독주택용지 : 변경없음

나. 공동주택용지 : 변경없음

다. 준주거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라. 근린생활시설용지 : **변경**

(1) 근린생활시설용지(**변경**)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m ²)			획 지			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위치		면적(m ²)		
		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계		3,247.0	증)26.3	3,273.3	-	-	3,247.0	3,273.3	
근	①	1,300.6	증)356.4	1,657.0	-	-	1,300.6	1,657.0	
	②	1,946.4	감)330.1	1,616.3	-	-	1,946.4	1616.3	

■ 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근①	근린생활시설	면적 증가	· 근① 용지에 상생마당과 복합문화센터 통합 건립에 따른 근①과 근②의 획지규모(면적) 조정
근②	근린생활시설	면적 감소	

마. 상업용지 : 변경없음

바.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: 변경없음

3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
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가. 단독주택용지 : 변경없음

나. 공동주택용지 : 변경없음

다. 준주거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라. 근린생활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마. 일반상업용지 : 변경없음

바. 교육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: 변경없음

4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가. 단독주택용지 : 변경없음

나. 공동주택용지 : 변경없음

다. 준주거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라. 근린생활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마. 일반상업용지 : 변경없음

바. 교육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: 변경없음

Ⅲ.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면 : “실음생략”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
2. 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
3. 용도지구 결정도
4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5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6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Ⅳ.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: “실음생략”